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 및 영업 범위 현행화 정비(안 제3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제2조제8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6월 19일 ~ 2026년 7월 10일(20일 이상)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8(예정)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예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하여”를 “이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로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위생과 ☎ 940-8533
입안자	위 생 과 장	장 혜 현
	위생관리1팀장	한 은 숙
	담 당 자	최 윤 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u>이용하여</u>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 략)</p> <p><신 설></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영업장소) ①----- ----- ----- <u>이용하여</u> 일반음식점영업,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로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총리령 제2077호, 2026.1.2. 일부개정]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2024. 7. 3., 2026. 1. 2.>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 5. 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9. 11. 20.>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

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다만, 해당 영업 시설 또는 장소 운영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정 2021.12.31.> [단서신설 2023.7.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3.7.18.]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7.1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7.18.>
4.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개정 2023.7.18.>
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시립공원 <개정 2023.7.18.>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전문개정 2023.7.18.]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신설 2018.3.20.] <개정 2023.7.18., 2025.10.10.>
8.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3.20.] <개정 2023.7.18.>
9.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제7호에서 이동 <2018.3.2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과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7.2.3 조례 제 1346호
(일부개정) 2019.7.19 조례 제 15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7.1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시민중심
덕진 파주**

파 주 시



수신 위생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30)

1. 위생과-16856(2026.06.11)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통보서(2026A경기파주030) 1부. 끝.


여성가족관장직

여성정책지원팀
원 권문영 여성정책팀장 이영실 여성가족과장 한영희 2026. 6. 12.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1815 (2026. 6. 12.) 접수 위생과-16856 (2026. 6. 12.)
주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0			
정책명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위생과		
	담당자명	최윤철	전화번호	031-940-85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위생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6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 031-940-8684)				
위생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위생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음식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위생과-16851(2026. 6. 11.)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30	위생과	파주시 음식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사(2)한장 대필 2026. 6. 12. 이선 감사관 진필


협조자 집행 시행 감사관-6986 (2026. 6. 12.) 접수 위생과-16972 (2026. 6. 12.)

주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6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56@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30		
자치법규명	파주시 음식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위생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보건7급 최윤철
평가결과 통지일	2026. 6.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위생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위생과-16852(2026. 6. 11.)호와 관련합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위생과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인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동계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2026. 6. 15.	조우원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9931	(2026. 6. 15.)	접수	위생과-17084	(2026. 6. 1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위생과
	담당	팀장 한은숙 담당자 최윤철
3. 관련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을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제2조제8호 	
4. 주요골자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 및 영업 범위 현행화 정비(안 제3조)	
5. 심사의견	<p>○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 및 영업 허용 장소 명확화를 통해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동계팀 권성원 (4171)	